

의안 번호	제3583호
----------	--------

김포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5년 2월 28일 유매희, 권민찬 의원
- 나. 회 부 일 자 : 2025년 3월 11일
- 다. 상 정 일 자 : 2025년 3월 18일
- 라. 의 결 일 자 : 2025년 3월 18일

2. 제안이유

- 일회성으로 사용되고 버려지는 폐현수막을 재활용하고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을 촉진함으로써 자원 낭비를 방지하고 환경을 보호함으로써 김포시 탄소 중립과 자원 순환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2조)
- 나. 시장 및 사업자의 책무 (안 제3~4조)
- 다.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안 제5조)
- 라.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마.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바. 포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수정안의 요지 : 안 제8조(포상 등)를 삭제.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9. 주문사항 : 없음
10.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수정안 1부.

김포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김포시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
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산화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
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에 따라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1.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실행계획 수립과 시행
2. 친환경 소재의 종류와 사용 효과에 대한 조사
3.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에 대한 지원
4.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5. 그 밖에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5조에 따라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제5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 ① 시장은 김포시가 제작하여 게시하는 공공 목적의 현수막에 대하여 사용 효과에 대한 조사를 통해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의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운영할 때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 게시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관내의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친환경 소재 현수막 우선 게시를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재정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사업
2.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3. 그 밖에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포상 등) 시장은 친환경 소재의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및 기업·단체, 공무원 등에게 「김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포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제3583호
----------	--------

제출년월일 2025. 3. 12.
제출자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1. 수정이유

- 포상 조항 선정 기준의 공정성 및 특정인에 특혜 시비 등 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어 삭제함.

2. 주요내용

- 안 제8조 삭제

김포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김포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수 정 안
<p>제8조(포상 등) 시장은 친환경 소재의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및 기업·단체, 공무원 등에게 「김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p>	<p><삭 제></p>